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여성장애인

장추련 법제위 여성차별연구팀

하나.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장추련 법제위 여성차별연구팀(이하 여성팀)은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40여차례 이상의 세미나와 모임을 갖고 여성장애인 관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였다.

먼저 여성팀은 노동, 교육, 접근권, 문화권, 가족 내 차별, 건강권, 모성권, 성의식 차별 및 성폭력, 시설폭력, 정신지체인에 대한 차별, 자립생활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여성장애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풀어내고, 이를 토대로 법안에 담길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적극적 참여가 어려웠던 농아여성들과 시각장애여성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별도로 만남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여성팀은 성, 모·부성권, 건강권, 가족·가정 및 시설, 폭력 등 5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초안을 마련하고 법제정 소위원회에서 발제하였으며, 그 외에도 여성팀 세미나 기록을 토대로 차별금지 각 영역에서 여성장애인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별도 여성장애인 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초안을 만들어 다듬고 법제위, 상집위 등의 회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였다.

두울, 법안에서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의 양상은 삶의 전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관련 법과 제도는 여성장애인 차별과 권리보장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오히려 여성장애인을 소외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주목하였다.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전체에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이 담기도록 하였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에관한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 장애인관련 법률을 보면 한, 두 조항에서 여성장애인을 언급하거나 아예 여성장애인이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장애인이 언급된 조항들도 들여다보면 선심 쓰듯 선언적으로 끼어들어가 있다. 이에 반해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는 제 1장 총칙부터 제 6장 벌칙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 속에 여성장애인의 관점에서 차별이 녹아날 수 있도록 주의하고, 법안 전체를 여성장애인의 시각에서 스크린 하였다.

둘째, 여성장애인이 겪는 차별의 특수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고용, 교육 등 여성장애인이 생활영역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성차별, 임신·출산·육아 등

모성권과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 및 건강 문제 등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의 특수성이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엣, 제 2장 차별금지 장에서는

제2장 차별금지 내에는 필요한 경우에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를 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 1절 고용 제7조 2항, 제 3절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제17조 2항, 제 4절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제20조 2항, 제 7절 문화 제28조 3항, 제 8절 체육 제30조 1항 등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 10절 모·부성권, 제 11절 성, 제 12절 가족 가정 시설, 제 13절 건강권, 제 14절 폭력 등 각 절은 주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차별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정한 것으로 남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까지 포함되도록 포괄하였다.

제 10절은 임신, 출산, 육아 등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모·부성권으로 묶어 담았다. 가부장적 문화속에 임신, 출산, 육아 하면 여성장애인만의 문제로만 얘기되곤 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모성권의 개념에 장애남성 부성권의 개념까지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법안이 되도록 하였다.

제 10절부터 제 14절중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제 12절 가족 가정 시설과 제 14절 폭력 부분이었다.

먼저 제 12절 가족 가정 시설 내에서의 차별은 초기에는 “가정 내에서의 차별금지”로 하고, 진보된 가정의 개념을 수용하여 가정구성원에 동거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가족과 가정이 교집합^한 관계이며, 사례추출을 통하여 “시설”은 별도로 개념정리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가정, 가족, 시설을 한 데 묶어서 주로 사적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제 14절 폭력은 법제위소위원회 논의 초기에 폭력 자체가 범죄이고 명백한 차별인데 차별금지법에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논점이었다. 그러나 여성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형법 및 기타 특별법에서 범죄로 정하고 있는 외에도 모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착취의 대상으로 쉽게 드러나는 등의 특성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입증과 처벌의 문제가 있지만 차별금지법에 가시적으로 명료하게 폭력의 문제를 담고자 노력하였다.

네엣, 제 3장 왜 여성장애인 장인가?

제 3장 여성장애인 장은 본 법안의 가장 큰 쟁점사항중에 하나였다. 제 2장에서 여성장애인 차별금지가 어느 정도 담보되고 있는데다, 단독 장으로 가는 형식도 어색한데 굳이 여성장애인 장이 필요하겠는가? 라는 공격과 질문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여성팀과 여성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고 이를 장추련이 받아들인 결과 여성장애인 장을 따로 정하게 되었다.

제 2장 차별금지에 여성장애인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의 양상과 정도를 감안하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 차별은 뿌리 깊게 사회구조적으로 집단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인식 측면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왜곡은 더욱 심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 차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법과 제도는 전무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도 분석해보면 남성장애인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정책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 차별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제 2장에서 포함하지 못한 여성장애인차별을 담으며, 대 사회적으로 여성장애인 차별을 구체적으로 공론화 하고 사회인식 개선시킬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단독장이 필요하다.

제3장 여성장애인 장은 일상이나 생활영역에서도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더욱 빈번하고 강도가 다르며, 다른 형태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에 주목하고 법안 내용을 구성하였다.